

대전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2가단133391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3. 1. 19.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449,251원과 그 중 54,619,872원에 대하여 2022. 2. 25.부터 2022. 9.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 6. 7. 체결한 증여계약을 50,494,6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50,494,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D생) 사이에 2021. 12. 27.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21. 12. 27. 접수 제561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원인은 별지2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 및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충주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감정인 G의 시가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C은, 피고 A과 1995년경부터 상거래를 하다가 위 피고의 자금경색으로 2021. 10. 27.경 65,100,000원의 외상대금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피고의 다툼을 위 근저당설정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취지로 보더라도,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가 선의였다고 볼 다른 증거는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충주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17239㎡
대지권 종류 : 1.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1. 17239분의 52.303

2. 충청북도 충주시 임야 702㎡

(별지2)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나. 피고 A는 'H'라는 상호의 기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자입니다.

다. 피고 B는 피고 A의 배우자로,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입니다.

라. 피고 C는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입니다.

2.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청구권 발생

가.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 발행

-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 1호증의 1, 2 신용보증약정서, 갑 제2호증의 1, 2 신용보증서 각 참조).

신용보증약정	보증종류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보증금액
제1신용보증약정	대출보증	2008. 09. 03.	2009. 09. 02.	25,5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09. 10. 20.	2010. 10. 19.	47,500,000원
합 계				73,000,000원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 할 경우,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상환범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1.보증채무이행금액, 2.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6.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7.대위변제수수료, ②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비용과 1.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신용보증약정서 참조).

나. 신용보증서 발행

1) 제1신용보증서 발행

2) 제2신용보증서 발행

원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10. 20. 소외 은행에 보증번호 K [] ,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0. 10. 19.(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에 의하여 보증기한이 2022. 10. 7.로 변경됨)로 하는 제2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2 신용보증서, 갑 제3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제3항 원장정보 각 참조).

다. 대출 실행 및 대출금 미변제

피고 A [] 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제1보증서에 기하여 30,000,000원을, 제2보증서에 기하여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대출이자 연체에 따라 2022. 1. 18.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갑 제4호증의 1,2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참조).

라. 구상금 청구채권 발생

원고는 피고 A [] 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여 피고 A [] 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의 1,2 대위변제증서 참조).

보증	대위변제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대위변제금 잔액
제1보증	L 은행	2022. 02. 26.	20,555,491원	166,270원	20,389,221원
제2보증			34,294,392원	63,741원	34,230,651원
합 계			54,849,883원	230,011원	54,619,872원

마. 대지급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상환범위”의 ②항에 근거하여 채무자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피고 A [] 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82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제2항 참조).

바. 지연손해금 및 확정손해금 발생

1
2
3
4
5

참조).

사. 소결

그렇다면 채무자 피고 A은 원고에게 55,449,251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0,389,221원+제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4,230,651원+제1보증 확정손해금 36원+제2보증 확정손해금 13원+대지급금 829,330원) 및 그 중 54,619,872원(제1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20,389,221원+제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34,230,6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법률행위

위와 같이 원고는 채무자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 있는 바, 피고

A은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 2021. 6. 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 2021. 12.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습니다(갑 제8호증의 1,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나. 사해의사

피고 A이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중요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각 마친 행위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소멸되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써, 이에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다.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원칙이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사해행위 이후인 2022. 2. 25. 대위변제가 되어 원고의 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지만, 2021. 6. 7., 2021. 12. 27. 각 사해행위 당시 이미 원

고와 피고 A 사이에 2008. 9. 3.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직후인 2022. 1. 18.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로 결국 채권발생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이에 피보전채권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고 A가 운영한 H는 신용보증사고에 앞서 국세청에 2021. 12. 31.자로 폐업신고 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참조)

4. 원상회복

가. 이 사건 제2부동산(원물반환)

피고 C은 사해행위취소에 기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가액배상)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21. 6. 9.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2021. 7. 9.에 기존 을구 5번 (원)E 근저당권이 등기말소 되었으며, 2021. 7. 8.에 새로운 을구 6번 (원)M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 제1부동산 시가 및 가액배상액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말소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실질 피담보채무액을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시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부동산감정평가에 의하면 감정일인 2022. 11. 18. 기준 이 사건 제1부동산 시가는 127,00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갑 제12호증 감정평가서 참조).

한편 말소된 ㉠E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 피고 A이 가지는 피담보채무액은 76,505,388원입니다(갑 제14호증 ㉠E 회신서 참조).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한 수익자 피고 B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액은 50,494,612원(부동산 시가 127,000,000원-피담보채무액 76,505,388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로 변경합니다.

